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03

발의연월일: 2025. 3. 24.

발 의 자:김태선·김주영·박 정

허 영・윤종군・윤준병

정준호 • 한민수 • 위성락

이용우 · 오세희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침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,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·안보, 경호 등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를 비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특수활동비의 목적 등이 법률이 아닌 지침에 규정되어 있어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,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 절차 및 감시 체 계 역시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이에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, 일정 금액 이상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국회,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,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(안 제44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2(특수활동비의 관리 등)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을 참고하여 특수활동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②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, 외교·안보, 경호 등의 목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.
 -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특수 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그 집행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 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집행내역이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집행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선 설> 제44조의2(특수활동보) ① 각 중앙관서의 에 따라 통보받은 하여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마련히 ② 특수활동비는 요구되는 정보 및 고 아내 경호 드	비의 관리 등)
파·안모, 정호 등한 국정수행활동이 되어야 한다. ③ 각 중앙관서의 정부장관이 정하는 의 특수활동비를 그 집행내역을 기이 정하는 기한끼부장관에게 제출하 ④ 기획재정부장된 따라 제출받은 집체없이 국회 소관예산결산특별위원의에 제출하여야 한대 ⑤ 기획재정부장된	· 지침을 참고에 관한 세부 하여야 한다. · 기밀유지가 사건수사, 외 의 목적을 위에 직접 사용 장은 기획재 이상 집행한 경우 기획재정하여야 한다. 관은 제3항에 집행내역을 지하여야 한다. 라는 상임위원회, 회 및 감사원다.

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집행내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